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검 토 보 고

- 〈 임시조치 관련 결정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통지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46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4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등(제221114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제안경위 등(제2211149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내용	5
2.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의 통지·고지	9
3. 임시조치 관련 결정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통지·고지	26

I. 제안경위 등(제2211146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2025. 6. 27.

다. 회 부 일: 2025. 6.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취소·변경·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

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

II. 제안경위 등(제2211149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2025. 6. 27.

다. 회 부 일: 2025. 6.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조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 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보호 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취소·변경·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아동

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제22011146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정폭력처벌법안”)과 제2201114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안”)은 모두 법원이 가정폭력·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관련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 관련 결정에 따른 통지·고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임시조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임시조치의 종류와 결정의 유형에 따라 통지·고지의 범위가 달라짐.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시조치) ① ·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211146호 제29조(임시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⑪ (생략)

<신설>

-----검사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관할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원은 제1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취소, 임시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및 피해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가정폭력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 등의 장,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 제2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

⑫ (생 략)

제19조(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 ⑥ (생 략)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
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 략)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
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
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
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
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
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 설>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2211149호

제19조(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검사,
관할 경찰관서의 장-----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취소, 임시
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
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
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피해
아동등 및 아동학대행위자 등
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관할 경찰관서의 장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
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

<u><신 설></u> <u><신 설></u>	<u>는 시장·군수·구청장 및</u> <u>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u> <u>기관의 장: 취소, 연장 또는</u> <u>변경의 취지 통지</u> <u>2. 아동학대행위자: 취소, 연장,</u> <u>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u> <u>불복방법 등 고지</u> <u>3.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u> <u>위탁 의료기관의 장, 제20조</u> <u>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의</u> <u>보조인 등: 제19조제1항제6호</u> <u>또는 제7호에 따른 임시조치</u> <u>를 한 사실</u>
---	---

- 가정폭력처벌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안의 시행일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양 법률 모두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2.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의 통지·고지

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

□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각각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그 규율대상인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가 상호 중첩되는 면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절차 등 규율내용이 유사한 면이 있음.¹⁾

○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규율대상인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임. 다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도리어 부적당한 경우에는 형벌을 대체 또는 보충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함(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6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7호).²⁾

1) 이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함을 밝히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2)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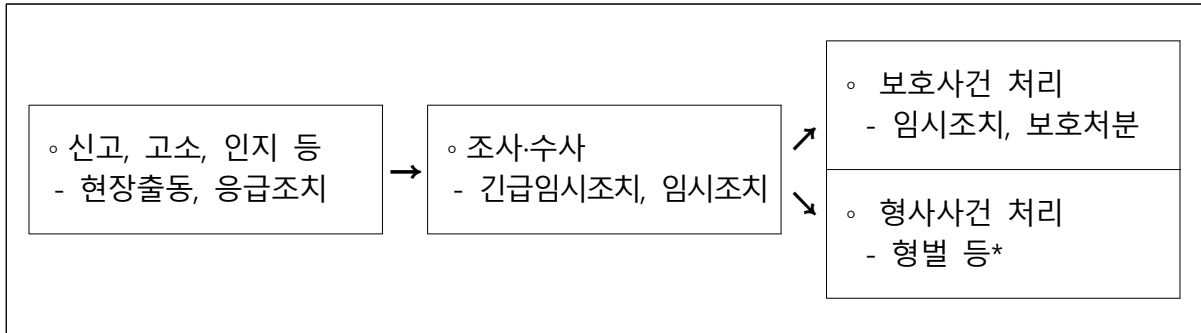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 >



* 수강명령 등 병과 가능(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모두 보호처분으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을 각각 인정하고 있음(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³⁾⁴⁾

3)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 ⑥ (생략)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 ⑦ (생략)

- 4) 친권 행사의 제한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은 임시조치에는 규정하지 않고 보호처분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 한편,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에게 형벌이나 보호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그 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두고 있음.

○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나 급박한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중지·예방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취하는 제지,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의미함(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및 제8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및 제13조).⁵⁾

5)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이중 긴급임시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접근 금지 등을 법원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임시조치로의 이행 또는 그 취소가 예정되어 있는 잠정적 성격의 조치임(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⁶⁾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② ~ ⑩ (생략)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6)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시간 내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청구를 배척하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되어야 함.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임시조치의 의의와 종류

□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로부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접근 금지, 상담위탁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의미하는 것임.

○ 검사는 대상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⁷⁾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⁸⁾

7)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잠정조치 중 의료기관 등 위탁(제29조제1항제4호) 및 상담위탁(제29조제1항제6호)을 검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 참고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는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형제자매등”)의 보호도 임시조치의 결정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차이가 있음.

○ 양 법률의 임시조치 종류는 유사한데, 긴급임시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는 임시조치로 할 수 있으며, 상담위탁,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도 임시조치로 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종류의 임시조치는 병과(丙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같음.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 ⑫ (생략)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 ⑨ (생략)

- 9)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병과는 그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의 병과는 동법 제19조제2항이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 등 행사에 대한 제한·정지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만 인정되고 있고,¹⁰⁾ 가정폭력처벌법은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의 임시조치 종류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함.¹¹⁾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비교 >

구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퇴거 등 격리	○	○	○	○
100m 이내 접근 금지	○	○	○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	○	○
친권 등 제한·정지	-	-	-	○
관련 기관 상담위탁 등*	-	○	-	○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	○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	-	○

*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상담 및 교육 위탁,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대상 상담위탁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10)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피해자의 친권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친권 등 행사의 제한·정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 11)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상담소 등(註: 동법에서는 ‘상담소등’으로 약칭)이란,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의미함(동법 제4조 참조).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형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기 전의 조사·수사·심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는데, 다만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기간의 상한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가정폭력처벌법은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의 기간 상한은 2개월로, 상담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임시조치의 기간 상한은 1개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9조제5항).¹²⁾

○ 아동학대처벌법은 모든 종류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그 기간 상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9조제4항).¹³⁾

< 임시조치 종류별 기간 상한 >

구분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친권 등 제한	의료기관 등 위탁	상담위탁 등*	유치장 등 유치
		100m	전기통신				
가정폭력	2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아동학대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상담 및 교육 위탁,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아동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대상 상담위탁

12)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註: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註: 상담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3)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임시조치 관련 결정과 그 통지·고지

1) 임시조치의 결정과 그 통지·고지

□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법원은 검사, 피해자 및 가정폭력·아동학대행위자 등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¹⁴⁾

○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였을 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검사와 피해자이며,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요양소에의 위탁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그 보조인 등에게도 통지·고지하여야 함(동법 제29조제3항·제4항).¹⁵⁾

- 동법의 시행을 위한 「가정보호심판규칙」은 임시조치의 결정은 행위자에게도 통지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 시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동 규칙 제4조 및 제5조).¹⁶⁾

14) 다만, 후술하듯 가정폭력·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임시조치에 따라 권익을 제한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통지·고지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15)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 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항고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알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판단됨.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註: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註: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또는 제5호(註: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의 임시조치 결정은 검사, 피해아동, 형제자매등,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일정한 종류의 임시조치는 아동학대행위자나 그 보조인 등에 대하여도 통지·고지되어야 함(동법 제19조제7항, 제20조).¹⁷⁾
- 한편, 「아동보호심판규칙」도 모든 임시조치 결정 시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 시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정이 통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동 규칙 제4조 및 제5조).¹⁸⁾

1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결정(註: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외의 결정(註: 임시조치 결정 등)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註: 임시조치 결정 등)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주: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17)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8)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註: 임시조치 결정 등)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註: 임시조치 결정 등)은

○ 결국 양 법률 모두 검사, 피해자(피해아동), 행위자 등을 기본적인 통지 대상으로 하고, 임시조치의 유형에 따라 행위자의 보조인이나 수탁·유치기관의 장 등을 통지·고지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상담위탁 결정 시에도 수탁기관의 장을 통지 대상에 추가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상담 및 교육 위탁 결정 시 수탁기관의 장을 통지 대상에 포함하므로, 유사한 성격의 임시조치라도 통지·고지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임시조치 결정의 통지·고지 대상 >

구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임시조치 일반	◦ 검사 ◦ 피해자 ◦ 행위자	◦ 검사 ◦ 피해아동, 형제자매등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해자 보호기관의 장 ◦ 행위자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 등 유치	◦ 행위자의 보조인, 법정대리인,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 ◦ 수탁·유치기관의 장	◦ 행위자의 보조인, 지정한 사람 ◦ 수탁·유치기관의 장
상담위탁 등*	-	◦ 수탁기관의 장

*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대상 상담위탁,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상담 및 교육 위탁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註: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을 한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2) 임시조치의 변경 결정과 그 통지·고지

□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임시조치 부과와 전제가 된 상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임시조치도 상황에 맞추어 달라질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법원이 그 임시조치의 기간 연장, 취소 또는 종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임시조치의 기간연장결정, 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이하 “변경 결정”)은 크게 볼 때 기존 임시조치를 변경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르므로, 동일한 법률에서도 변경 결정의 유형에 따라 그 절차에 차이가 존재함.

○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기간연장결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된 횟수에 한하여, 취소결정과 종류변경결정은 법원의 직권 또는 가정폭력행위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각 이루어짐.

- 기간연장결정의 경우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각각 2개월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및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29조제5항).¹⁹⁾

- 취소결정 또는 종류변경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와 그 법정대리인·보조인 등의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 있음(동법 제29조제10항·제11항).²⁰⁾

○ 아동학대처벌법도 기간연장결정의 횟수 상한을 규정하고, 기간연장 결정과 취소결정·종류변경결정의 신청·청구권자를 구분하고 있음.

- 기간연장결정은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데(동법 제22조제2항·제3항),²¹⁾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친권 등 행사 제한·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기타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19조 제4항).²²⁾

19)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21)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기간연장결정, 취소결정 또는 종류변경결정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은 가정폭력처벌법처럼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그 법정대리인·보조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동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²³⁾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같은 조 제4항).²⁴⁾

22)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3)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24)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註: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이처럼 기존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기간연장결정 등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고지가 필요하게 됨.

○ 가정폭력처벌법상 기간연장결정 등 임시조치 변경 결정에 대한 통지의 대상에는 당초 임시조치 결정 당시의 통지 대상인 피해자, 행위자 및 수탁·유치기관의 장 외에 해당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등이 포함됨(「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²⁵⁾

25)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 등은 동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를 인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임시조치 변경 결정의 통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취소·변경 결정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 ② (생략)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결정

2. · 3. (생략)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보호처분 결정

3.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결정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 ~ ④ (생략)

- 아동학대처벌법상 기간연장결정 등 임시조치 변경 결정에 대한
 통지·고지의 대상에도 검사, 피해자, 행위자, 수탁·유치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²⁶⁾

26) 「아동보호심판규칙」의 임시조치 변경 결정의 통지·고지 대상은 「가정보호심판규칙」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략)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 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취소·변경결정

2.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의 고지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註: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 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다른 종류의 임시조치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아동학대행위자에게 관련 결정을 통지·고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 제19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에는 해당 결정 사실을 가정폭력·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알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고지 대상 >

구분	가정폭력				아동학대			
	임시 조치	기간 연장	취소	종류 변경	임시 조치	기간 연장	취소	종류 변경
검사	○	-	-	-	○	-	-	-
피해자(피해아동)	○	△	△	△	○	△	△	△
형제자매등	-	-	-	-	○	-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	-	-	-	○	△	△	△
행위자	○**/△	△	△	△	○**/△	△	△	○**/△
행위자의 보조인 등*	○	-	-	-	○	-	-	○
수탁·유치기관의 장*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	-	-	○	-	-	-
임시조치 집행 경찰서의 장 등	-	△	△	△	-	△	△	△

*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

**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

주: 1. ○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는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경우, -는 규정이 없는 경우

3. 임시조치 관련 결정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통지·고지

가. 검토의견

1) 개 관

-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종류와 그 결정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통지·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통지·고지 사항을 살펴보면, ① 현재는 법령상의 통지·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과 ② 현재는 하위 법령에 따라 통지·고지 되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가정폭력·아동학대행위자나 기존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 대한 기간연장·취소·종류변경결정에 대한 통지 등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최초 임시조치결정의 통지 등임.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정보호심판규칙」, 「아동보호심판규칙」 등의 대법원규칙에서는 기존 임시조치 기간연장결정 등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통지 대상에는 기존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도 포함됨.

- 따라서 각 개정안에 대하여는 임시조치의 종류 및 결정의 유형에 따른 통지 대상자별로,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상향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처벌법안 관련

□ 가정폭력처벌법안에 따라 추가되는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 및 고지를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결정·기간연장결정·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 등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9조제3항, 동조 제12항 제1호).

- 안 제29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의 통지 부분은 현행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고, 안 제29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기간연장결정 등 통지 부분은 현행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제1항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임.²⁷⁾

다만,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현행 「가정보호심판규칙」은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을 통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안은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을 통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27)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결정

4. (생략)

○ 검사에 대하여는 임시조치의 기간연장결정·취소결정 및 종류변경 결정 등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9조제12항제1호).

- 안 제29조제12항제1호에 따른 검사에 대한 기간연장결정 등의 통지는 현행 법령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임. 이러한 점에서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²⁸⁾

○ 피해자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취소결정·종류변경결정 등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9조제12항제1호).

- 안 제29조제12항제1호에 따른 기간연장결정 등의 통지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임.²⁹⁾

28) 다만, 검사는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60조 등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위치에 있으므로, 실제로 있어 검사가 기간연장결정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해적일 것으로 판단됨.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략)

29)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간연장결정, 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 등의 고지가 추가됨(안 제29조제12항제2호).

- 안 제2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기간연장결정 등의 고지는 현행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통지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제2항과 달리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³⁰⁾ ‘통지’ 대신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요양소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의료기관·요양소의 장애 대한 임시조치 사실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9조제12항제3호).

- 안 제29조제12항제3호 중 의료기관·요양소의 장애 대한 통지 부분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임.³¹⁾³²⁾

3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결정

2. 3. (생략)

32)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요양소의 장애 대한 통지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유형에는 취소결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법정대리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 사실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9조 제12항제3호).

-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기간연장결정 등의 통지는 현행 법령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³³⁾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정폭력처벌법안에 따른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고지 범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처벌법안에 따른 통지·고지 범위 변경 >

구 분	임시조치결정		기간연장결정		취소결정		종류변경결정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검사	○	○	-	○	-	○	-	○
피해자	○	○	△	○	△	○	△	○
행위자	○**/△	○**/△	△	○	△	○	△	○
행위자의 보조인 등*	○	○	-	○	-	-	-	○
의료기관·요양소의 장*	△	△	△	○	△	△	△	○/△
관할경찰관서의 장***	-	○	△	○	△	○	△	○

*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

**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

*** 현행은 기존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주: ○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는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경우, -는 규정이 없는 경우

33) 현행법 제29조제4항은 최초의 임시조치결정으로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하여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임시조치의 기간연장결정 등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가정폭력처벌법안에 따른 통지·고지의 대상자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경찰관서의 장에게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제12항제1호는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집행을 효율화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현행 법률이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등에 따라 재판의 집행이 검사에게 맡겨져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현재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임시조치 관련 결정이 통지되고 있다는 점, 법원으로부터 직접 관련 결정을 통지받는 것이 임시조치의 신속한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안은 관할경찰관서를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건의 수사에 대한 관할과 임시조치의 집행에 대한 관할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의 취지는 임시조치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조치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9조제12항제1호 중 검사에게 임시조치 변경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는 부분은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 검사는 재판의 집행을 소관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에 따라 다양한 임시조치 관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³⁴⁾ 따라서 각종 임시조치 관련 결정을 검사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 안 제29조제12항제1호는 이를 법률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데에 기여할 것임.
- 안 제29조제12항제1호 중 피해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변경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법률 차원의 통지 범위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4) 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향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변경 결정의 고지를 추가하는 안 제29조제12항제2호는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가정폭력행위자는 임시조치 집행의 직접적인 대상일 뿐 아니라 임시조치 관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법 제49조), 해당 결정의 고지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안은 최초로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때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통지·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최초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고지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9조제12항제2호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통지와 불복 방법 등의 고지를 모든 종류의 임시조치 변경 결정에 인정하므로, 현행 제29조제4항 후단을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취지로 볼 소지도 있음.³⁵⁾ 따라서 안 제29조제12항제2호를 반영할 경우 제29조제4항

35) 제29조제4항은 법원이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불복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29조의2제1항은 모든 종류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그 집행 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등 관련 규정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로, 안 제29조제12항제2호는 결정 내용에 대하여도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결정 내용의 통지와 불복방법 등의 고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제2항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 결정의 내용은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³⁶⁾³⁷⁾

○ 안 제29조제12항제3호 중 의료기관·요양소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의 통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에 규정된 수탁·유치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의 내용 중 일부를 상향하는 것이지만,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율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안 제29조제12항제1호가 ‘통지’, 같은 항 제2호가 ‘고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 제29조제12항제3호는 ‘통지’와 ‘고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는데,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36) 가정정보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다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는 임시조치의 내용도 ‘고지’한다고 표현하고 있음.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의 태도 등을 참고하면 ‘통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제29조제1항제4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으로는 ① 최초의 임시조치로서의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결정, ② 기존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의 기간연장결정, ③ 기존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의 취소결정, ④ 다른 임시조치에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으로의 종류변경결정 또는 ⑤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에서 다른 임시조치로의 종류변경결정 등이 있을 것임.

이중 ①의 경우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라는 표현에는 부합하나 안 제29조제12항은 기간연장결정 등 기존 임시조치결정의 변경 결정에 관한 조문이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는 최초의 임시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항 제3호에서만 달리 해석할 수 있겠는지 문제될 수 있음.

반면, ③의 경우 임시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임시조치의 취소 사실을 알릴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취소결정까지도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라는 표현에 포함될 수 있겠는지 불명확함. 마찬가지로 ⑤의 경우 그 실질을 다른 종류의 임시조치에 대한 최초의 결정과 기존 임시조치인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의 결합

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전자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후자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역시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불명확함.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임시조치 관련 결정 중 어떤 결정까지 의료기관·요양소의 장에게 알리도록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제1항제3호의 조문 위치 및 표현 등의 수정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안 제29조제12항제3호는 ‘위탁 의료기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원이고, 의료기관 등은 해당 업무를 수탁하는 것이므로, ‘수탁 의료기관 등’으로 법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을 한 경우 유치기관의 장에게도 임시조치 사실을 알리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⁸⁾

38) 「가정보호심판규칙」은 제5조에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과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를 포괄하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를 두고 있고, 현행법 제29조제4항과 안 제29조제12항제3호 등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통지 규정에서도 의료기관·요양소 위탁과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같이 규율하고 있음.

참고로, 안 제29조제12항제3호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부과 및 고지를 규정한 현행 제29조제6항·제7항과 같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³⁹⁾ 종류변경결정 등에 따라 비로소 의료기관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행 제29조제6항·제7항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9조제12항제3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 사실의 통지 부분 역시 그 규율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⁰⁾

-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기간연장결정 등의 통지는 현행 법령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임. 이러한 점에서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9조제12항제3호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게 ‘제29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9)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0) 안 제29조제12항제3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부분 역시 법문상으로는 통지인지 또는 고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그러나 법원에서 최초의 임시조치결정으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제29조제1항제4호)나 유치장·구치소 유치(제29조제1항제5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현행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보조인 등에게 그 결정 사실이 통지되고 있다는 점, 안 제29조제12항은 기간연장결정, 취소결정,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의 임시 조치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을 하는 경우는 안 제29조제12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란, ① 기존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의 기간연장결정, ② 기존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의 취소결정, ③ 다른 임시조치에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으로의 종류변경결정, ④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에서 다른 임시조치로의 종류변경결정 등을 상정할 수 있음.

그런데 ②의 취소결정은 제2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에서,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따른 통지 대상인지가 불분명함.

④의 다른 임시조치로의 종류변경결정도, 기존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 조치에 대하여는 취소결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최초의 임시조치결정으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 외에 다른

종류의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29조제12항 제3호에 따른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소지가 있음.

반면에, ③의 경우, 즉 다른 임시조치에서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으로의 종류변경결정은 의료기관·요양소 등을 기준으로 보면 최초의 임시조치결정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미 현행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고 볼 소지도 있음.

따라서 안 제29조제12항제3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부분 역시 기간연장결정 등 다양한 유형의 결정 중에서 어떤 유형의 결정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29조제12항제3호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통지를 모든 종류의 임시조치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인정하므로, 현행 제29조제4항 전단을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취지로 볼 소지도 있음.⁴¹⁾ 따라서 안 제29조제12항제3호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41)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4항 전단은 법원이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 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안 제29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시조치의 종류를 취소”는 “임시조치의 취소”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아동학대처벌법안 관련

□ 아동학대처벌법안은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안과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달리 형제자매등,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아동학대처벌법안에 따라 추가되는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고지를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결정·기간연장결정·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 등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19조제7항, 제22조제5항제1호).

- 안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간연장결정 등 통지 부분은 현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제1항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아동보호심판규칙」에서는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을 통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안은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을 통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검사에 대하여는 임시조치의 기간연장결정·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 등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2조제5항제1호).

- 이는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임.

- 피해아동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 등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2조제5항제1호).
 - 이는 현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임.⁴²⁾
- 형제자매등,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 등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2조제5항제1호).
 - 형제자매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피해아동 보호기관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결정의 통지는 현행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임.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사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결정의 통지는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임.

42)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기간연장결정, 취소결정 및 종류변경결정 등의 고지가 추가됨(안 제22조제5항제2호).
 - 안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연장결정 등의 고지는 현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아동폭력행위자 대상 통지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제2항과 달리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⁴³⁾ ‘통지’ 대신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2조제5항제3호).
 - 안 제22조제5항제3호 중에서 위탁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부분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임.
- 임시조치 중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 사실의 통지가 추가됨(안 제22조제5항제3호).

4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최초의 임시조치결정으로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임시조치결정의 종류를 변경하여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2조),⁴⁴⁾ 안 제22조제5항제3호는 해당 종류의 임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44)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② (생략)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동학대처벌법안에 따른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고지 범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처벌법안에 따른 통지·고지 범위 변경 >

구 분	임시조치결정		기간연장결정		취소결정		종류변경결정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검사	○	○	-	○	-	○	-	○
피해아동	○	○	△	○	△	○	△	○
형제자매등	○	○	-	○	-	○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	-	○	-	○	-	○
행위자	○**/△	○	△	○	△	○	○**/△	○
행위자의 보조인 등*	○	○	-	○	-	-	○	○
의료기관·요양시설의 장*	△	△	△	○	△	△	○	○/△
관할경찰관서의 장***	-	○	△	○	△	○	△	○

*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

**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

*** 현행은 기존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주: ○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는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경우, -는 규정이 없는 경우

□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안에 따른 통지·고지의 대상자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⁴⁵⁾

- 경찰관서의 장에게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제1호는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집행을 효율화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안은 관할경찰관서를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건의 수사에 대한 관할과 임시조치의 집행에 대한 관할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의 취지는 임시조치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조치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2조제5항제1호 중 검사 및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변경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는 부분은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통지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45) 이하의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안에 대한 검토와 유사한 것임.

○ 형제자매등,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임시조치 변경 결정의 통지를 추가하는 안 제22조제5항제1호는, 그 대상자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제자매등의 경우 현행법상 임시조치의 목적에는 형제자매등의 보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⁴⁶⁾ 긍정적인 면이 있음. 다만, ‘형제자매등’이란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또는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을 통칭하는 것이어서 피해아동과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의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과 생활을 함께하지 않는 형제자매인 아동까지 통지의 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는지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의 경우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 차원의 통지 범위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46) 임시조치결정에 관한 제19조제1항은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아동등이란 피해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등도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형제자매등의 보호도 임시조치의 목적에 포함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피해아동 보호기관의 장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임시조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권한과 그에 대한 통지 여부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⁴⁷⁾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 관리를 위하여 요청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변경 결정의 고지를 추가하는 안 제22조제5항제2호는 임시조치 관련 결정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안은 최초로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때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지·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초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통지·고지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2조제5항제2호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지 및 불복 방법 등 고지를 모든 종류의 임시조치 변경 결정에 인정하므로,

47)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피해아동 보호기관의 장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4조제2항), 임시조치의 취소·종류변경 등에 대하여는 그러한 요청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 제20조를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취지라고 볼 소지도 있음.⁴⁸⁾
따라서 안 제22조제5항제2호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등 관련
규정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로, 안 제22조제5항제2호는 결정의 내용에 대하여도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결정 내용의 통지와 불복방법 등의
고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제2항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도
결정의 내용은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⁹⁾

- 안 제22조제5항제3호 중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의 장에 대한 임시
조치 사실의 통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최초의 임시조치결정, 임시
조치의 취소결정,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에서 다른 임시조치로의
종류변경결정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결정까지 의료기관·요양시설의 장에게 알리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조문 위치나 표현 등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8)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는 법원이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에게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
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49)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안 제22조제5항제3호는 ‘위탁 의료기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원이고, 의료기관 등은 해당 업무를 수탁하는 것이므로, ‘수탁 의료기관 등’으로 법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안 제22조제5항제3호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을 한 경우 유치기관의 장에게도 임시조치 사실을 알리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⁰⁾

참고로, 안 제22조제5항제3호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부과 및 고지를 규정한 현행 제19조제5항·제6항과 같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⁵¹⁾ 종류변경결정 등에 따라 비로소 의료기관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행 제19조제5항·제6항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0) 「아동보호심판규칙」은 제5조에서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과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를 포괄하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를 두고 있고, 현행법 제20조와 안 제22조제5항제3호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통지 규정에서도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과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같이 규율하고 있음.

51)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 제22조제5항제3호 중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 사실의 통지 부분 역시 최초의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의 취소결정, 의료기관·요양 시설 위탁에서 다른 임시조치로의 종류변경결정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등 그 규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²⁾

한편, 안 제22조제5항제3호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통지를 모든 종류의 임시조치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인정하므로, 현행 제20조를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취지로 볼 소지도 있음.⁵³⁾ 따라서 안 제29조제12항제3호를 반영하는 경우 제20조 등 관련 규정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 밖에 안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시조치의 종류를 취소”는 “임시조치의 취소”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52) 안 제22조제5항제3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부분 역시 법문상으로는 통지인지 또는 고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53)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는 법원이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1) 가정폭력처벌법안

□ 법원행정처는, 대상자와 결정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29조제3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통지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안 제29조제12항제1호 중 검사와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 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안 제29조제12항제1호 중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현행 「가정보호심판규칙」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 대한 통지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임시조치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방안,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보조인 등에 대한 통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9조제1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소의 장에 대한 임시 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해당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유치장·구치소의 장을 통지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제29조제7항을 준용하지 않아 최초의 임시조치로서 의료기관 위탁 등을 결정하는 경우와 종류변경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 등을 결정하는 경우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개정안이 법률에 반영될 경우 재판의 통지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보다 늦은 시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학대처벌법안

□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19조제7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통지 부분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안 제22조제5항제1호 중 검사 및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피해 아동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에 한하여 불복방법을 고지하는 것은 해당 유형의 임시조치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 이므로, 다른 유형의 임시조치에까지 불복방법의 고지를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안 제22조제5항제3호 중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현행 제20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방어권 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연장 및 종류변경 시 검사,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임시조치 실효성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임시조치 결정 시 절차에 준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법무부 수정안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 ⑧ (생략)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 ⑧ (개정안과 같음)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u>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u>위탁의 절차,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 및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략)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u>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피해아동등 및 아동학대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u>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u>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u>
1. <u>검사, 관할 경찰관서의 장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u>	<삭 제>
2. <u>아동학대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u>	<삭 제>
3. <u>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의 장, 제20조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 등: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한 사실</u>	<삭 제>
<신 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u>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19조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u>

□ 법원행정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19조제7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통지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안 제22조제5항제1호 중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피해아동 보호기관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안 제22조제5항제1호 중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현행 「아동 보호심판규칙」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 대한 통지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고지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임시조치결정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방안, 아동학대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보조인 등에 대한 통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소의 장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보조인 등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결정, 기간연장결정 및 종류변경결정의 통지 부분은 해당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면서도 유치장·구치소의 장을 통지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 등과 달리 제19조제1항제5에 따른 상담 위탁의 수탁기관인 상담소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제19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아 최초의 임시조치로서 의료기관 위탁 등을 결정하는 경우와 종류변경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 등을 결정하는 경우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개정안이 법률에 반영될 경우 재판의 통지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보다 늦은 시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